

###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25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('99. 9. 7일 충청북도 조례 제2515호) 이에 따른 조직명칭을 일원화하고
-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명문화시키고자 함

#### 2. 주요골자

-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
  - 당연직위원 : 복지환경국장, 농정국장, 건설교통국장
  - 간 사 : 환경관리과장 ⇒ 환경과장
  - 서 기 : 환경관리담당 ⇒ 환경기획담당사무관

#### 3. 조례개정(안) : 따로 붙임

#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# 5. 관련규정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위원 : 복지환경국장, 농정국장, 건설교통국장
2. 위촉위원 :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8조 제2항 중 “환경관리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, “환경관리담당”을 “환경기획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- - - - - - - - - -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위원 : 복지환경국장, 농정국장, 건설교통국장</p> <p>2. 위촉위원 :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</p> <p>④(삭제)</p>
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.</p>	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